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02

발의연월일: 2021. 2. 1.

발 의 자: 안호영·송옥주·노웅래

앙이원영ㆍ아수진비ㆍ김병욱

윤준병 • 이소영 • 장철민

윤미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언론 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의문제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선언적인 규정을 명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등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을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근로환경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사용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 고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및 제32조).

법률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외국인근로자 인권 등에 관한 사용자교육) 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1.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
- 2.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고용보험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 3.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사용자교육의 시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제22조의3에 따른 사용자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용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자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자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2조의3(외국인근로자 인권 등
	에 관한 사용자교육) ① 제8조
	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
	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
	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교육"이
	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보건법」,「고용보험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
	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교육의 시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32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 략) <u><신 설></u>

9. • 10. (생략)

②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22조의3에 따른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용자
9.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